

3.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0년 12월 4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소방안전본부장)
- 회부일자 : 2020년 12월 7일
- 상정일자 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년 12월 16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소방본부장 代 소방행정과장 박정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·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,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,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본칙 3개조, 부칙3개조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방특별회계의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 중 조례로 위임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을 규정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신록휴)

○ 이 개정조례안은

- ▶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」 (2019.12.10. 제정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.)이 제정 (2020.9.22. 제정) 및 시행(2021.1.1.)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- ▶ 안 제명을 「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」에서 「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였음.
- ▶ 안 제1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시행령	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
<p>제4조(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)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</p> <p>1. 특별시·광역시(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)·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: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(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
- ▶ 안 제2조에서는 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.
- ▶ 안 제3조에서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비율을 규정하였음.
 -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²⁾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함.

2)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: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) 및 선박(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(시행일 : 2021. 1. 1.)

개정 전(법 제146조)			개정 후(법 제146조)		
세분류	과세대상	목적	세분류	과세대상	목적
특정자원 (제1항)	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	① 소방재원	특정자원분 (제1항)	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	① 지역자원 보호·보전
		② 자원보호·개발	특정시설분 (제2항)		② 주민생활, 환경 개선
특정부동산 (제2항)	건축물, 선박	③ 환경개선	소방분 (제3항)	건축물, 선박	① 소방재원
	건축물·토지	④ 지역균형개발			
			<삭제>	※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	

<소방정책사업비계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입범위 >

구 분	위임사항(시행령 제4조)	조례안 제2조
소방정책 사업비의 세입	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70이상 범위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함	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70이상

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금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법과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소방청 표준안에 근거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,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, 종전의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, 채권·채무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